힘내라 대한민국 / 식품의약품안전처	보도참고자료	배 포	2020. 6. 4.(목)
		담 당 과	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 (☎043-719-2162)
		과 장	최현철 (☎043-719-2170)
		사 무 관	권혁승 (☎043-719-2162)

수입중단 식품 해외제조업소 공개 법적근거 명확화

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·시행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이의경)는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」 개정안이 6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외실사를 거부하거나 위해발생 우려가 있어 수입 중단된 식품의 해외제조업소 정보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고 밝혔습니다.

○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수입식품이 수입중단 또는 해제 조치된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에 대한 정보를 수입식품정보마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.

* 수입식품정보마루(impfood.mfds.go.kr) → 안전정보 → 제품 및 업체 검색 → 업체조회(제조/작업장/수출) → 해외제조업소・해외작업장(축산물)・수출업소 탭

- 주요 공개 내용은 ▲수입중단 또는 해제 조치된 해외제조업소 등의 명칭 및 소재지 ▲제조국·생산국 ▲품목유형 ▲수입중단 또는 해제 사유 및 날짜 등입니다.

□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여 수입식품 등의 안전정보를 적극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

OPEN 공공누리
마스크·손소독제 매점매석 신고 02-2640-5080
해외감염병 NOW
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